

제 5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5.1 조 정의

제 1 절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 5.2 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 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 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을 말한다.

제 5.2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 2) 제 2.4 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또는
 - 3)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 5.3 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 2 항에 기술된 조사 개시 직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 개시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 개시 후 실행 가능한 한 공청회 및 협의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3 조 및 제 4 조제 2 항다호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3 조 및 제 4 조제 2 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 2 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4 조제 2 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4 조제 2 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6 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 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당사국은 이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부터, 연장을 포함하여 이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 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비적용기간이 최소 2 년이어야 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 년이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5.4 조

잠정조치

1.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 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날 후 최소한 45 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즉시 협의를 개시한다.

4. 모든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180 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 5.3 조제 2 항 및 제 5.3 조제 3 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5. 그 당사국은 제 5.3 조제 2 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 5.2 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 5.3 조제 5 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5.5 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 일 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 일 내에 제 1 항에 따른 협의를 통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행해져 왔고 그러한 조치가 이 절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 2 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 년간 행사되지 않는다.

4. 제 1 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 2 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5. 모든 보상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제 5.6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당사국이 1994 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조치를 적용하려는 경우, 그 당사국은 1994 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될 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한다.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 5.7 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 협정 제 6.5 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12.4 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국 간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 사안에 대해 다음의 관행을 준수한다.

가. 반덤핑 협정 제 2.4 조제 2 항상의 비교 기준에 관계없이, 반덤핑 협정 제 2 조, 제 9.3 조, 제 9.5 조 및 제 11 조에 따라 반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반덤핑 협정 제 9.1 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최소 관세'가 적절할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을 주의를 가지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라. 조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질의서에 대한 적시의 대답을 요청한다. 조사 당사국이 마감기한 전에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명확화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당사국은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관한 정보의 명확화를 요청한다. 이 절차는 조사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마감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제 5.8 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할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15 일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할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및 특히 제 5 항,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12.7 조 및 제 12.8 조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조사 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 6.8 조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12.7 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려는 경우, 조사 당국은 다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 가.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대한 설명
- 나. 이해당사자가 조사 당국에 제출하지 못한 정보, 그리고
- 다. 조사 당국이 나호에 언급된 정보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사실

제 5.9 조 재심에 의한 종료 후 조사

한쪽 당사국은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 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 5.10 조 누적적 평가

2 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 5.11 조 반 우회덤핑 조사 협력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협정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라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반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고, 반 우회덤핑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우려를 방어할 권리를 존중하기로 합의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조사 대상인 기업에 대한 비밀이 아닌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4.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현지실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절차에서, 한쪽 당사국은 조사 대상인 기업에 사전 통보한다.
5. 반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최종판정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조치를 적용할지 또는 면제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형성하는 고려 중인 필수적 사실을 알린다. 그 당사국은 그러한 평가에 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필수적인 사실의 공개는 이해당사자가 그들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는 또한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